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52841(본소), 2023가단29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지료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미연, 이기선, 정연호, 박영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권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230m²(이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 부분 약 10m²(이하, 이 사건 계쟁부지)에 관하여 2015. 5.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5. 1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2. 22.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부지에 원고의 조부인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G이 1963. 11. 21.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후 음력 1966. 2. 24.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20평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분묘를 이를 수호·관리하여 오다가 G이 1978. 12.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를 수호·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5. 1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5. 10.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부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부지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2013. 7. 4.부터 2023. 7. 3.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연주

별지